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 한병도 · 김성원 · 허종식

박정현 · 장철민 · 이춘석

안도걸 • 박용갑 • 김용태

이양수 • 조승환 • 서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확충, 일자리창출, 청년인구의 유출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과는 달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법적 정의 및 지원 규정 등이 미비하여, 각 지역을 넘어 범국가적 사회문제로 대두 된 지방소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관심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 2, 제21조, 제22조, 제23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 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인구감소지역등에"로 하고, 같은 조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중 "인 구감소지역에"를 각각 "인구감소지역등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 • 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65세 이 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 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 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 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제21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 제21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책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책 추진) -----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서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 스 여건 개선·확충, 교통·물 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 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역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공동체 지원 및 활 성화, 주민과 지역의 역량 강

화,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에 관한 시책 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 특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② <u>인구감소지역에</u> 입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u>인구감소지역등에</u> 대한
지원) ①
<u>인구감소지역등에</u>
 ② 인구감소지역등에
·

- 1. ~ 4. (생 략)
- ③ 인구감소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인구감소지역등에
<u>.</u>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1 t) (1)
인구감소지역등
② ~ ⑥ (현행과 같음)